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19. 12. 13. 사회건설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: 2019년 10월 11일

나. 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9년 11월 20일

라. 상정일자 : 제21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(2019. 10. 21.) 상정 "보류" 의결

마. 재상정일자 : 제218회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

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(2019. 12. 5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안전교통국장 정언택)

가. 제안이유

- 예기치 못한 자연·사회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정과 피해보상을 위한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.
- 나. 주요내용
 -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
- 보험의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, 보험료 납입(안 제3조~제4조)
- 보상금액의 산정(안 제5조)
- 피해신고 및 조사, 보험금 지급청구, 보험금 지급 등 (안 제6조~제8조)
- 보상제외(안 제9조)
- 시행규칙(안 제10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이정옥)

- 본 조례안은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정과 피해보상을 위한 구민생활안전보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임.
- 주요 내용으로
-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
-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보험의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,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을
- 안 제5조부터 제9조에서는 보상금액의 산정, 피해신고 및 조사, 보험금의 지급 청구, 보험금 지급, 보상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- 생활안전보험은 각종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보장하는 제도로,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본청과 구로구 등 16개 자치구가 조례를 제·개정하여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음.
- 최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다양화·대형화되고 재난 및 안전 관리에 대한 국가와 자치 단체의 책임이 강화되고 있음. 따라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를 보상하여 구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의의가 있고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적정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됨. 향후,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하여 보험 계약 시 보험의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, 주민이 보험금을 직접 청구해야 하므로 보험제도에 대한 적극적

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됨.

4. 수정안의 요지

가. 수정이유

○ 구민 수요, 사업의 시급성, 기대효과, 예산 합리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행시기를 수정

나. 수정내용

○ 부칙 "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" 중 "공포한 날"을 "2020년 10월 1일"로 수정함.

5. 심사결과 : 수정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번 호 제164호 <mark>판 련</mark> 번 호 제안연월일: 2019. 12. 5.

제 안 자: 이규선 의원 외 1명

1. 수정이유

○ 구민 수요, 사업의 시급성, 기대효과, 예산 합리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행시기를 수정함.

2. 수정내용

○ 부칙 "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" 중 "공포한 날"을 '2020년 10월 1일'로 수정한다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부칙 "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" 중 "공포한 날"을 "2020년 10월 1일" 로 수정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부 칙	부 칙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	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약하는 구민생활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구민생활안전보험"(이하 "보험"이라 한다)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 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(이하 "구"라 한다)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계약 을 말한다.
- 2. "보험기관"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「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」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.
- 3. "재난"이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.
- 4. "구민"이란 영등포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구민에 포함시킬 수 있다.
 - 가. 「출입국관리법」 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
 - 나.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 국내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
- 5. "피해자"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구민을 말한다.
- 제3조(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보험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

보상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.

- 제4조(보험료 납입)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.
- 제5조(보상금액의 산정)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,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상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.
- 제6조(피해신고 및 조사)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할 수 있다. 다만,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인이 할 수 있다.
 - ② 보험회사가 피해를 조사할 때 피해자와 제1항에 따른 법정상속인(이하 '피해자등'이라 한다)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,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7조(보험금의 지급 청구) 피해자등은 보험기관이 정한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3조에 따라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해당 보험기관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.
- 제8조(보험금 지급 등) ① 보험기관은 제7조의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은 때에는 피해자등에게 제5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.
 - ② 보험기간 등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험약관에 따른다.
- 제9조(보상 제외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된다.
 - 1. 구민이 재난 발생일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
 - 2.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
- 3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구민생활안전보험 조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- 1. 비용발생 내역(조례안 시행시 예상되는 비용을 기재)
 - 구민생활안전보험 가입비: 120,000천원
 -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에 따른 홍보비: 2,000천원
- 2. 미첨부 근거 규정(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지 표시)
 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<u>제12조제2항의</u>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
- 3. 미첨부 사유(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자료 제시)
 -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소요예산: 122,000천원(3억원 미만)
 - O 차년도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보험 가입 추진
 - 보험가입비 조정(보상금 보장한도 상한액의 조정)
 - 필요시 지속사업 여부 검토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안전교통국 도시안전과 김봉준
연 락 처	02-2670-3065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

의 안 번 호 제 164 호 제출연월일: 2019. 10. . 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예기치 못한 자연 ·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 안정과 피해보상을 위한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
나. 보험의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, 보험료 납입(안 제3조~제4조)

다. 보상금액의 산정(안 제5조)

라. 피해신고 및 조사, 보험금의 지급청구, 보험금 지급 등 (안 제6조~제8조)

마. 보상제외(안 제9조)

바. 시행규칙(안 제10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: 2020년 예산 반영 예정

*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

다. 협의사항

1) 부패영향평가: 원안동의

2) 인권영향평가: 인원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됨

3) 성별영향분석평가: 개선할 사항 없음

4) 행정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
라. 입법예고(2019, 9, 11, ~ 10, 1, / 20일간) 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약하는 구민생활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구민생활안전보험"(이하 "보험"이라 한다)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 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(이하 "구"라 한다)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계약 을 말한다.
- 2. "보험기관"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「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」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.
- 3. "재난"이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.
- 4. "구민"이란 영등포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구민에 포함시킬 수 있다.
 - 가. 「출입국관리법」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나.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 국내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
- 5. "피해자"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구민을 말한다.
- 제3조(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보험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.
- 제4조(보험료 납입)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.

- 제5조(보상금액의 산정)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,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상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.
- 제6조(피해신고 및 조사)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할 수 있다. 다만,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인이 할 수 있다.
 - ② 보험회사가 피해를 조사할 때 피해자와 제1항에 따른 법정상속인(이하 '피해자등'이라 한다)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,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7조(보험금의 지급 청구) 피해자등은 보험기관이 정한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3조에 따라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해당 보험기관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.
- 제8조(보험금 지급 등) ① 보험기관은 제7조의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은 때에는 피해자등에게 제5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.
 - ② 보험기간 등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험약관에 따른다.
- 제9조(보상 제외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된다.
 - 1. 구민이 재난 발생일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
 - 2.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
- 3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구민생활안전보험 조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- 1. 비용발생 내역(조례안 시행시 예상되는 비용을 기재)
 - 구민생활안전보험 가입비: 120,000천원
 -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에 따른 홍보비: 2,000천원
- 2. 미첨부 근거 규정(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지 표시)
 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<u>제12조제2항의</u>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
- 3. 미첨부 사유(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자료 제시)
 -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소요예산: 122,000천원(3억원 미만)
 - 차년도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보험 가입 추진
 - 보험가입비 조정(보상금 보장한도 상한액의 조정)
 - 필요시 지속사업 여부 검토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안전교통국 도시안전과 김봉준
연 락 처	02-2670-3065